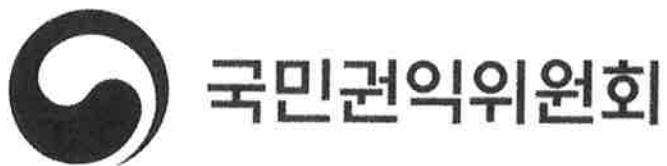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ACRC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2 - 641호

의 안 명 「제약·의료기기분야 리베이트 균절을 위한 행정처분 등 실효성 제고 방안」

대상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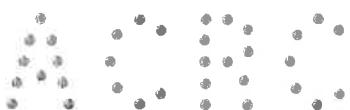
의 결 일 2022. 8. 29.

주 문

제약·의료기기분야 리베이트 균절을 위한 행정처분 등 실효성 제고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2년 8월 29일

위 원 안 성 옥

위 원 김 기 표

위 원 강 재 영

위 원 박 계 옥

위 원 박 상 희

위 원 이 근 동

위 원 박 홍 규

위 원 임 성 문

위 원 방 이 엽

위 원 손 난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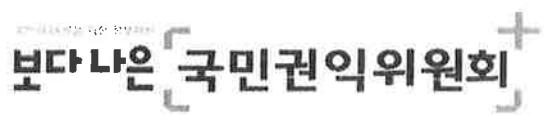
위 원 강 길 연

위 원 최 정 묵

위 원 송 현 주

A B C

[별지]



제약 · 의료기기분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행정처분 등 실효성 제고 방안

2022.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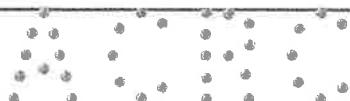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



순서

I. 추진배경 및 경과	1
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1. 기관간 정보공유로 불법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 등 실효성 제고 …	2
2. 신유형 리베이트(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방지 의무규정 마련	7
III. 조치사항 및 기한	10
붙임 1. 관계 법령	
2. 공공의료기관 현황	



I.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실·국 연계과제 : 공정위 리베이트 위법사실 관계기관 통보 제도개선(부패방지국)

□ 추진배경

- 제약·의료기기분야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10.11월 리베이트 쌍별제*'를 시행하는 등 각 기관에서 다년간 노력하고 있으나 위반행위 지속
 - *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 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의료인도 형사처벌 및 자격정지 처분
 - 지난 5년간 공정위의 제약·의료기기분야 리베이트에 대한 처분내역에 의하면, 처분 대상인 제약사나 의료기기사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의원 2,070개, 의료인 2,700명, 제공금액 253억원에 이를
-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관계기관간 정보 미공유로 인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지연·누락 문제 발생
 - 공정위와 복지부·식약처, 공공의료기관간 불법 리베이트 처분내용을 공유하여 소관 법령 등에 따라 의료인과 제약·의료기기사업자에 대한 처분이 행해져야 하나, 통보 규정 부재
 - 「인·허가 관련범죄 통보지침」(대검찰청예규)에 따라 복지부·식약처는 검찰 수사결과를 통보받고 있으나, 공정위는 통보대상에 비해당
 - 쪽지처방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강기능식품 사업자에 대한 금지규정 미비
-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처분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실태조사(1~4월), 제도개선 방안 마련(5~6월), 기관협의(7월), 위원회 상정(8월)



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기관간 정보공유로 불법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 등 실효성 제고

□ 현황

○ 제약·의료기기분야 불법 리베이트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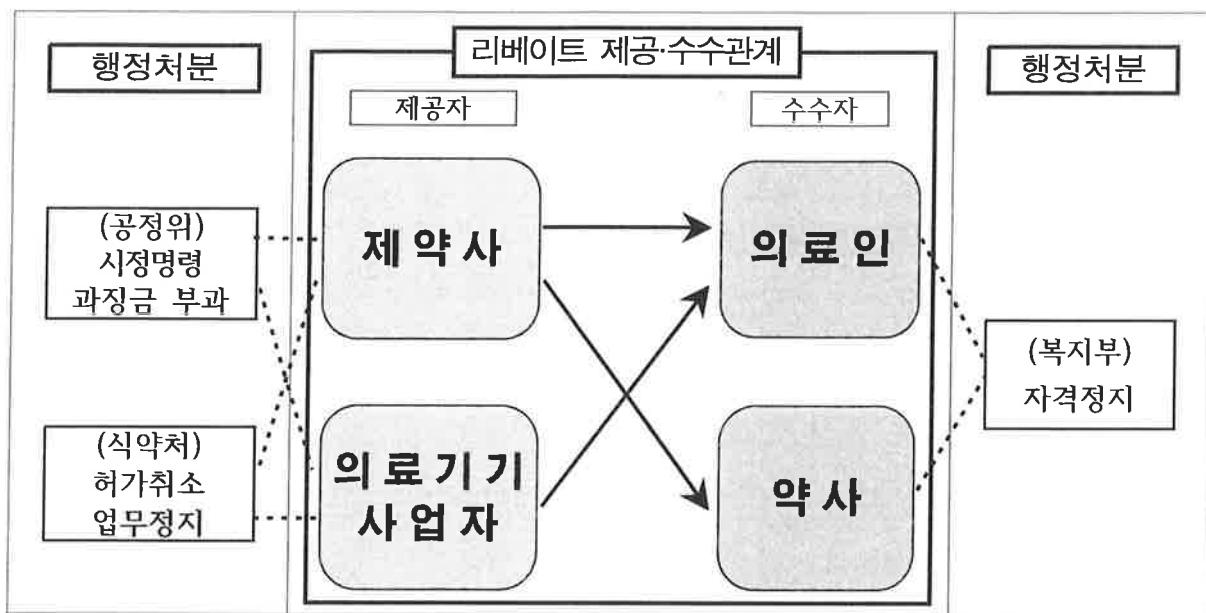
- 제약사 및 의료기기사업자가 자사 제품의 채택·처방(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의,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제품 가격에 리베이트 비용이 전가되어 국민과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 초래

*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이익등은 허용(의료법 제23조의5제1항 단서)

○ 관계 법령

- (공정거래법)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부당고객유인 행위) 금지
- (의료법) 의료인 등은 의약품공급자나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자로부터 제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수수 금지
- (약사법) 의약품공급자는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금지하며, 약사는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제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수수 금지
- (의료기기법)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자는 의료인 등에게 제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 행정처분 관계도



○ 공정위 리베이트 처분 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사업자명 (제약·의료기기)	행정처분내역	경제적 이익	
			수수자	이익제공 범위
2017년	(주)○○○○	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2,169,000)	병·의원 1,947개	14,043,201
	○○○○○○○(주)	시정명령	의사 1명	9,270
	○○○○○○○(주)	시정명령, 고발, 과징금 부과(500,000)	의사 2,032명	7,682,350
2018년	○○○○○○(주)	시정명령	의사 53명	9,332
	(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5,000)	의료인 1명	59,840
	○○○○○○○(주)	시정명령	의료인 1명	10,000
2019년	○○○○○○○○(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300,000)	병원 1개	수술보조인력 지원 등
2020년	(재)○○○○○○○○○ 재단 ○○○의원	시정명령	병·의원 24개	24,788
2021년	○○○○○(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16,000)	의사 14명	16,990
	○○○○○○○○(유)	시정명령	의사 24명	27,721
	○○○○○(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252,000)	의료인 등 80명 (병·의원 73개)	1,757,974
	○○○○○○○○	시정명령	8개 병원	33,120
	○○○○○○○○(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240,000)	병·의원 90개	800,850
	(주)○○	시정명령, 과징금부과(78,000)	의료인 494명 (병원 75개)	861,696
계	14개		의료인 2,700명 병·의원 2,070개	25,337,132

(출처 : 공정위 의결서 분석자료)

*음영표시 : 의료기기사업자

□ 문제점

- 공정위는 제약사·의료기기사업자의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관계 조사 후 법 위반사실을 특정하여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행하나, 타 기관의 행정처분을 위한 위반사실 통보 근거규정은 부재
 -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부당고객유인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제약사·의료기기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과징금 부과)만 가능
 - 복지부는 의료법·약사법에 따라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약사의 의료·조제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자격정지 처분만 가능
 - 식약처는 약사법·의료기기법에 따라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의료기기사업자의 제조·판매를 제한하기 위해 허가취소 및 판매 정지 처분만 가능

■ ○○○○제약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공정위는 제약사가 의사에게 현금 1,000만원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여 '18.3월 시정명령 처분을 한 반면, 식약처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1.3월 해당 의약품에 대해 3개월 판매정지 처분 ('22.4월 권익위 실태조사)

- 국·공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은 공직자 신분으로, 청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리베이트 수수행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에도 해당
 -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정위에서 공공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 정보 미공유로 해당 의료기관 징계절차 및 유사사례 방지 미흡
 - ※ 복지부·식약처의 리베이트 처분 관련 의료인 정보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공공기관운영법' 등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소속 공공의료기관에 통보

- 복지부·식약처는 「인·허가 관련범죄 통보지침」(대검찰청예규 제896호)에 따라 검찰에서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의 수사결과를 통보받아 추가 조사를 거쳐 의료인 및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나,
 - 공정위는 「인·허가 관련범죄 통보지침」상 리베이트 범죄사실 통보 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복지부·식약처에 통보된 수사결과 미공유

※ 현재 복지부가 제약·의료기기분야 리베이트에 대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검찰 수사결과가 식약처나 지자체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될 경우 「리베이트 처분통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복지부에서 재통보
-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기관 간 협력하여 자료 분석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된 변종 **리베이트**(① 학술대회 기부금, 원고료, 강연료 등 합법적 지원으로 가장하는 방식, ② 외상 매출을 약정기일 내 지급받으면 일정액을 할인해 주는 매출할인제, ③ 영업대행사(CSO)에 높은 수수료를 주고 이 중 상당 부분을 리베이트로 활용하는 방식, ④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를 병원에 임상시험 의뢰하고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식 등) 근절을 위하여, **공정위와 협력하여** 공정경쟁규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을 분석하고**, 지출보고서 부실·누락 기재에 대한 대책을 마련 ('20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 개선방안

- (공정위) 복지부·식약처에 제약·의료기기분야 리베이트 처분내용을 통보하여 행정처분 지연·누락 방지
 -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시 리베이트 수수자가 공공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인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
 - 통보받은 행정기관 등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협조의무 명시

⇒ 「제약·의료기기분야 리베이트 사건처리 가이드라인」(가칭) 등 마련(공정위)

< (예시) '제약의료기기분야 리베이트 사건처리 가이드라인'(가칭) 개선(안) >

1.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제4호(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근거하여 처리한 사건이 의료분야 사업자(제약사, 의료기기사업자)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건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1.의 사건 행위사실에서 의약분야 사업자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 보건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공공 보건의료기관 각각에 대해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1.과 2.의 통보는 공정위 처분 이후 30일 이내에 공문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정위 의결서 전체 또는 일부를 첨부한다.
4. 사건 담당자는 2.와 3.의 통보를 받은 기관이 자료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복지부) 「인·허가 관련범죄 통보지침」에 따라 검찰에서 통보받은 리베이트 수사결과를 공정위에 정보 공유

⇒ 「리베이트 처분통지 가이드라인」 등에 반영(복지부)

2 신유형 리베이트(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방지 의무규정 마련

□ 현황

-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이 10% 이상 급성장

※ 국내시장규모 : ('17)19,504억원 → ('18)22,751억원 → ('19)27,202억원 → ('20)31,141억원

< 연도별 건강기능식품 산업규모 > (단위 : 억원)

연도	생산액(A)	수출액(B)	수입액(C)	국내시장규모 (A-B+C)
2016년	14,715	1,084	5,880	19,511
2017년	14,819	1,077	5,761	19,504
2018년	17,288	1,258	6,722	22,751
2019년	19,464	1,427	9,165	27,202
2020년	22,642	2,264	10,763	31,141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 식품의약품 산업동향통계」)

- 공정위는 '21.4월 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 사업자인 (주)○○○○○이 의료인으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쪽지처방*을 하여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시켜 부당고객유인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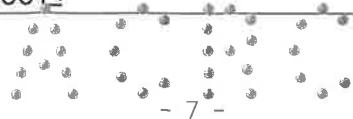
* 쪽지처방 :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성분명)이 기재된 용지에 소비자들이 특정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의사 등이 제품명(성분명)을 선택·표시하여 교부하는 행위

** 사업자는 쪽지처방 대가로 의료인에게 판매수익의 50% 수준 제공

————— <공정위 의결서 발췌본> —————

주 문

1. 피심인은 자기가 공급하는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 등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자신의 상품명이 기재된 종이에 특정 제품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피심인이 공급하는 상품을 반드시 구매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인시켜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가. 납부금액 : 70,000,000원



□ 문제점

-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은 아니나,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이 특정 건강 기능식품을 쪽지처방하는 경우 환자는 대체로 해당 제품을 구매
 - 그러나 현행 의료관계 법령상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처분규정 부재
-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특정 제품을 강매하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
 - 약사회와 함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사 2,055명 중 최근 5년 이내에 쪽지처방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약사가 559명으로 27%, 직접 경험은 없지만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527명으로 25%, 즉 **약사 52% 정도가 쪽지처방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으며, 건강기능식품이 가장 많았다고 답변**
 - 쪽지처방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특정 제품을 강매하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즉 불법일 뿐만 아니라 쪽지처방 판매 제품이 시중가보다 1.5배 비싸다는 의견이고 이 가격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

(‘21.10.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 의료인 등이 건강기능식품 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의원발의 (제12413호, ‘21.9.3.)되어 국회 계류 중이나,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강기능식품 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지규정 미비

※ 의원발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2413호)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③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한 자 또는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자로부터 건강기능식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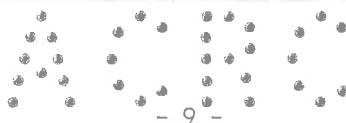
□ 개선방안

-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금지규정 마련
※ 건강기능식품 사업자의 리베이트 제공 금지규정 위반시 행정처분 및 벌칙 수반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식약처)

< (예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선(안) >

현 행	개 선 (안)
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관리와 유통질서 유지 및 국민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설>	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 ----- ----- -----. 1. ~ 4. (현행과 같음) <u>5. 건강기능식품 채택·사용유도·거래 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거나 의료 기관으로 하여금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6. ----- <u>제5호</u> ----- ----- -----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국민 보건 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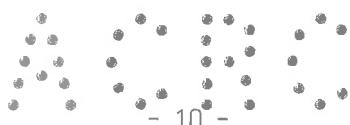


III. 조치사항 및 기한

□ 권고 대상기관 : 공정위, 복지부, 식약처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조치사항	소관기관	조치기한
① 기관간 정보공유로 불법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 등 실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위와 복지부·식약처간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통보하여 행정처분 지연·누락 방지<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베이트 수수자가 공공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인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 ⇒ 제약·의료기기분야 리베이트 처분내용 통보 규정 마련○ 복지부에 통보된 검찰 수사결과 공정위에 통보 ⇒ 「리베이트 처분통지 가이드라인」 등에 반영	공정위 복지부	'23. 6월
② 신유형 리베이트(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방지 의무규정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금지규정 마련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식약처	'24. 12월



【공정거래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제49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 · 제2항, 제46조, 제47조 또는 제48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제45조제2항 및 제47조의 경우에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를 말한다)에게 해당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해당 보복조치의 금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0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제46조 또는 제48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45조제1항(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자

제129조(고발) ①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 처방유도 ·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9. 제23조의5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⑥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1항제5호·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3조의5를 위반한 자.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제16조의5 관련)

허용 행위	허용 범위
1. 견본품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소 포장단위로 "견본품" 또는 "sample"이라는 문자를 표기하여 의료기관에 해당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제형·형태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최소 수량의 견본품을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제공받은 견본품은 환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2. 학술대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최하는 의학·약학, 의료기기 관련 학술연구 목적의 학술대회(학술대회 중에 개최되는 제품설명회를 포함한다)에 참가하는 발표자·좌장·토론자가 학술대회 주최자로부터 교통비·식비·숙박비·등록비 용도의 실비로 지원 받는 비용.<ul style="list-style-type: none">1. 의학·약학, 의료기기 관련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p>2.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회,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또는 「약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대한약사회·대한한약사회(이하 "보건의료단체"라 한다)</p> <p>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단</p> <p>4. 보건의료단체 또는 사업자(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품의 품목신고를 한 자, 의약품 수입자,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들로 구성된 단체가 승인 또는 인정한 학회(해외 학회를 포함한다), 학술기관·학술단체 또는 연구기관·연구단체</p>
3. 임상시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7항, 「의료기기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8항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을 말한다)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수량의 임상시험용 의약품 및 의료기기와 적절한 연구비. 이 경우 해당 요양 기관에 설치된 관련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비임상시험(非臨床試驗: 동물실험 또는 실험실 실험 등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4. 제품 설명회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실제 비용의 교통비, 5만원 이하의 기념품, 숙박, 식음료(세금 및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1회당 1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p> <p>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복수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한 의사·치과 의사·한의사에게 사업자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p> <p>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복수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다음 어느 하나의 행사</p> <p>1)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한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이하 이 표에서 "보건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자의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p> <p>2)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한 보건의료인 및 시술·진단관련 종사자에게 사업자의 의료 기기와 관련한 시술 및 진단기술의 습득·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p> <p>다.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의료기관에 소속한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국내에 수입되지 않은 수입업자의 의료기기와 관련한 기술 습득 및 기술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국외 교육과 국외 훈련(해당 의료기기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허가 또는 사용방법의 변경 등의 경우가 아니면 반복된 교육·훈련은 제외한다)</p> <p>라.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외국에서 복수의 외국 의료기관에 소속된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자사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와 시술 및 진단기술의 습득·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다만, 강연자로 참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로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식음료(세금 및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1일 10만원 이하로 한정하며, 월 4회 이내만 허용한다) 및 사업자의 회사명 또는 제품명을 기입한 1만원 이하의 판촉물</p> <p>가. 사업자가 개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게 사업자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p> <p>나. 사업자가 개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한 보건의료인 및 시술·진단관련 종사자에게 사업자의 의료기기와 관련한 시술 및 진단기술의 습득·향상을</p>

	<p>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p> <p>※ 제품설명회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것만을 말이며, 보건의료인의 모임 등에 필요한 식음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p>
5.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0.6퍼센트 이하의 비용할인 2. 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1.2퍼센트 이하의 비용할인 3. 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을 단위로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거래금액의 1.8퍼센트 이하의 비용할인 <p>※ "거래가 있는 날"이란 의약품 및 의료기기가 요양기관에 도착한 날을 말한다.</p> <p>※ 거래금액의 일부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전체 거래금액에 대한 그 일부의 비율에 따라 비용할인을 한다.</p>
6. 시판 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제32조, 같은 법 제42조제4항 및 「의료기기법」 제8조에 따른 재심사 대상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시판 후 조사에 참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제공하는 증례보고서에 대한 건당 5만원 이하(희귀질환, 장기적인 추적조사 등 추가 작업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30만원 이하를 말한다)의 사례비. 이 경우 사례비를 줄 수 있는 증례보고서의 개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2조·제23조 또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증례보고서의 최소 개수로 하되, 연구목적, 해외허가 또는 해외등록 등을 위하여 특정품목에 대한 사례보고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수를 추가할 수 있다.
7. 기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회사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결제금액의 1퍼센트 이하의 적립점수(항공마일리지 및 이용적립금을 포함하되, 의약품 및 의료기기 대금결제 전용이 아닌 신용카드 또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대금결제를 주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신용카드의 기본 적립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점수는 제외한다). 2. 구매 전 의료기기의 성능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최소기한의 사용. 다만, 그 기한은 1개월을 넘을 수 없다.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② 의약품공급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의,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



(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거나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약사 또는 한약사는 의약품공급자 및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업무를 위탁받은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 처방유도 ·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거나 약국이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①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원료의약품의 등록을 한 자, 수입자,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약국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원료의약품의 등록을 한 자, 수입자,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약국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에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제조소 폐쇄(제31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77조제1호에서 같다), 영업소 폐쇄(제4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77조제1호에서 같다), 품목제조금지나 품목수입 금지를 명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 그 업자에게 책임이 없고 그 의약품등의 성분·처방 등을 변경하여 허가 또는 신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그 성분·처방 등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5의7.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경우

제79조(약사 · 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경우

제81조(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약품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제76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약국 개설자 또는 한약업사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9조제2항 제2호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약국개설자가 제76조제1항 제5호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제94조(별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87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5의2.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자.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의료기기법】

제13조(제조업자의 의무) ③ 제조업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의,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거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수입업허가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입되는 의료기기 또는 그 수입업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는 "수입"으로, "제조업허가"는 "수입업허가"로, "제조허가"는 "수입허가"로, "제조인증"은 "수입인증"으로, "제조신고"는 "수입신고"로, "생산관리"는 "수입관리"로, "제조업자"는 "수입업자"로 각각 본다.

제18조(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② 판매업자·임대업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①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리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또는 인증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수입·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천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 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10. 제13조제3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때

제38조(과징금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의료기기를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같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벌칙) 제13조제3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유통질서 유지 및 국민 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조시설과 제품(원재료를 포함한다)을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없고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관리할 것
 -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하지 말 것
 - 부패·변질되거나 폐기된 제품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환하여 줄 것
 -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국민 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생산 실적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의 폐쇄(제6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9호의2의 경우에는 그 영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제1호와 제5호는 제외한다), 제11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3. 제10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판매를 한 자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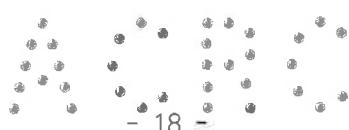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 · 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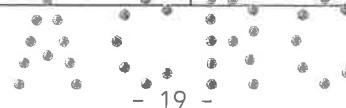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3.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4.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6.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8.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10.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11. 「암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
1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붙임2

공공의료기관 현황 (2020.12.31 기준)

연번	병원명	설립형태	근거 법령
1	서울대학교병원	특수법인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2	서울적십자병원	특수법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3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시도립	서울특별시 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	경찰병원	국립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특수법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6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시도립	서울특별시 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특수법인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8	국립중앙의료원	특수법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9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특수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0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시도립	서울특별시 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1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2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시도립	서울특별시 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3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시도립	서울특별시 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4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시도립	서울특별시 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5	서울지구병원	국립	국군조직법
16	국립재활원	국립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7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시도립	서울특별시 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8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특수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9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구립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	서울대학교치과병원	특수법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21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시도립	서울특별시 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2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원	특수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3	부산대학교병원	특수법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24	부산광역시의료원	특수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	특수법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26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특수법인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27	부산시립정신병원	시도립	부산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28	부산노인전문제1병원	시도립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29	부산노인전문제2병원	시도립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30	부산노인전문제3병원	시도립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31	부산노인전문제4병원	시도립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32	인천광역시의료원	특수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3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특수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4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특수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5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특수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6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특수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7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특수법인	국민건강보험법



연번	병원명	설립형태	근거 법령
38	국립암센터	특수법인	암관리법
39	국군수도병원	국립	국군조직법
40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특수법인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41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특수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2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특수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3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특수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4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특수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5	성남시의료원	특수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6	국군포천병원	국립	국군조직법
47	국군양주병원	국립	국군조직법
48	국군고양병원	국립	국군조직법
49	서울시립 백암정신병원	시도립	서울특별시 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0	인천광역시의료원 백령병원	특수법인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1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	시도립	서울특별시 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2	고양정신병원	시도립	서울특별시 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3	국군구리병원	국립	국군조직법
5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천보훈병원	특수법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55	인천적십자병원	특수법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56	인천시립치매요양병원	시도립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57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시군구립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8	경기도노인전문 동두천병원	시도립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9	경기도노인전문여주병원	시도립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0	경기도노인전문 용인병원	시도립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1	인천제2시립 노인치매요양병원	시도립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62	경기도노인전문남양주병원	시도립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3	경기도노인전문 시흥병원	시도립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4	근로복지공단 경기요양병원	특수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5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특수법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장애인복지법
66	경기도노인전문 평택병원	시도립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7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시군구립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68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시도립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9	강원도 삼척의료원	특수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70	강원도 영월의료원	특수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71	강원도 원주의료원	특수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72	강원도 속초의료원	특수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73	강원도 강릉의료원	특수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74	강원대학교병원	특수법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75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특수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6	국립춘천병원	국립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77	국군춘천병원	국립	국군조직법
78	국군홍천병원	국립	국군조직법

연번	병원명	설립형태	근거 법령
79	국군강릉병원	국립	국군조직법
80	강원도 재활병원	시도립	강원도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81	백두병원(21사단 의무대)	국립	국군조직법
82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	특수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3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특수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4	재) 정선의료재단 군립병원	시군구립	군립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85	춘천시 노인전문병원	시군구립	춘천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86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	시도립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87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특수법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88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특수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89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특수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90	충북대학교병원	특수법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91	공군항공우주의료원	국립	국군조직법
92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시군구립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설치와 운영 조례
93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도립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94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시군구립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95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시군구립	제천시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96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시군구립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97	청주시립요양병원	시군구립	청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98	충남대학교병원	특수법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99	충청남도 흥성의료원	특수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00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특수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01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특수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02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특수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0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전보훈병원	특수법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104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특수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5	세종충남대학교병원	특수법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106	국군대전병원	국립	국군조직법
107	육군훈련소 지구병원	국립	국군조직법
108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시도립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 조례
109	국립공주병원	국립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10	충청남도도립 흥성노인전문병원	시도립	충청남도 도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111	대전광역시립제1노인전문병원	시도립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112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시군구립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113	충청남도도립서산노인전문병원	시도립	충청남도 도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114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시군구립	서천군 서천어메니티 복지마을 운영 조례
115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시군구립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16	대전광역시립제2노인전문병원	시도립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117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	시군구립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18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	국립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19	세종특별자치시 시립의원	시도립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20	근로복지공단 대전의원	특수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연번	병원명	설립형태	근거 법령
121	계룡대지구의원	국립	국군조직법
122	계룡대지구치과의원	국립	국군조직법
123	계룡대지구한의원	국립	국군조직법
124	전북대학교병원	특수법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125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특수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26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특수법인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27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시도립	전라북도 도립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128	진안군의료원	시군구립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29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시군구립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130	정읍시립요양병원	시군구립	정읍시 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131	완주군아름다운노인전문병원	시군구립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132	부안군노인요양병원	시군구립	부안군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133	전라북도 고창노인요양병원	시도립	전라북도 도립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134	전라북도 남원노인요양병원	시도립	전라북도 도립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135	전북대학교치과병원	특수법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136	전남대학교병원	특수법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13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	특수법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138	목포시의료원	특수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39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특수법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140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특수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41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특수법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142	국립나주병원	국립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43	국립목포병원	국립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44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특수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45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특수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46	국립소록도병원	국립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47	국군함평병원	국립	국군조직법
148	호남권역재활병원	시도립	광주광역시호남권역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149	장흥통합의료병원	시군구립	장흥군 통합의학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50	영광군공립요양병원	시군구립	영광군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151	공립무안군노인전문요양병원	시군구립	공립무안군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운영 조례
152	진도군노인전문요양병원	시군구립	진도군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153	보성군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시군구립	보성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54	고흥군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시군구립	고흥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155	여수시노인전문요양병원	시군구립	여수시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156	곡성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시군구립	곡성군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157	광양시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시군구립	광양시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158	장성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시군구립	장성군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159	화순군립요양병원	시군구립	화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60	신안군공립요양병원	시군구립	신안군 공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161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시도립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설치 · 운영 조례
162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시도립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설치 · 운영 조례

연번	병원명	설립형태	근거 법령
163	광주시립정신병원	시도립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설치·운영 조례
164	함평군공립요양병원	시군구립	함평군 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165	근로복지공단 광주의원	특수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66	전남대학교치과병원	특수법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167	경북대학교병원	특수법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168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특수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69	대구의료원	특수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7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	특수법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171	경상북도안동의료원	특수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72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특수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73	상주적십자병원	특수법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174	칠곡경북대학교병원	특수법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175	영주적십자병원	특수법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176	국군대구병원	국립	국군조직법
177	해군포항병원	국립	국군조직법
178	울진군의료원	특수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79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특수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80	대구정신병원	시도립	대구광역시 대구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81	경상북도립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도립	경상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182	경상북도립 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	도립	경상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183	대구광역시 시지노인전문병원	시도립	대구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운영 조례
184	고령군립요양병원	군립	고령군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185	군립청도노인요양병원	군립	청도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186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군립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187	경상북도립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도립	경상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188	경상북도포항노인전문요양병원	도립	경상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189	대구광역시 서부노인전문병원	시도립	대구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운영 조례
190	시립문경요양병원	시립	문경시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191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시립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192	경주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시립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193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시립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194	울릉군 노인요양병원	군립	울릉군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195	칠곡군립 노인요양병원	군립	칠곡군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196	상주시립 노인요양병원	시립	상주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197	울진군의료원요양병원	군립	의료법
198	의성군공립요양병원	군립	의성군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99	육군3사관학교 의원	국립	국군조직법
200	경북대학교치과병원	특수법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201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특수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	경상대학교병원	특수법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연번	병원명	설립형태	근거 법령
203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특수법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204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특수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5	창원경상대학교병원	특수법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206	국립마산병원	국립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7	통영적십자병원	특수법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208	거창적십자병원	특수법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209	국립부곡병원	국립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10	경상남도립정신병원	시도립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
211	해군해양의료원	국립	국군조직법
212	시립창원 요양병원	시군구립	창원시 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13	경상남도립김해노인전문병원	시도립	경상남도립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
214	경상남도립 양산노인전문병원	시도립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
215	거창군립 노인요양병원	시군구립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216	경상남도립 통영노인전문병원	시도립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
217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시군구립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218	경상남도립 사천노인전문병원	시도립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
219	의령군립노인전문병원	시군구립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220	시립마산 요양병원	시군구립	창원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21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	시도립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222	부산대학교치과병원	특수법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223	부산대학교한방병원	특수법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22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특수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25	제주대학교병원	특수법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22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특수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27	제주권역재활병원	시도립	장애인복지법
228	제주의료원 부속 요양병원	특수법인	의료법
229	국립교통재활병원	국립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3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요양병원	특수법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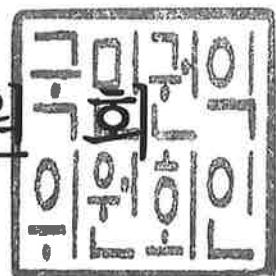
(출처 : 보건복지부)



정본입니다.

2022. 8. 30.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